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5. 26 선고 2019가합1064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엽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오화석, 박규택

변 론 종 결 2021. 4. 14.

판 결 선 고 2021. 5. 26.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4,128,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 및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374,128,96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4,128,9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약정금 채권

- 1) 원고는 원고 처의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중개보조원인 C을 소개받았다. 원고는 2017. 5.경부터 2017. 12.말경까지 C으로부터 각종 투자를 권유받고 355,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8. 9.경까지 각종 투자의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합계액은 205,000,000원이다.
- 2)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투자와 관련하여 수익금 186,10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C은 원고에게 337,000,000원(=투자원금 355,900,000원+수익금 186,100,000원 - 기지급금 20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합102619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3) 위 법원은 2020. 1. 16. ‘C이 2018. 8. 6.경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정산한 3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시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C)는 원고에게 3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20. 1.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C의 항소는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0. 9. 29.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에서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의 아파트 취득

- 1) 피고는 2017. 12. 7. D로부터 부산 남구 E, F에 있는 G아파트 H호의 분양권을 635,684,000원(=매도인이 납부한 금액 395,684,000원+권리금 240,000,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위 분양권을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2)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9. 1. 2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1. 31. 이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거래금액 740,000,000원). 피고는 C의 처이다.

다. 이 사건 송금행위

C과 J, K, L, I, M 등은 별지 [표1] 가.항 기재 일시에 순번 1 내지 6, 8 내지 14 기재 금액을 피고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원고는, C이
피고에게 순번 7 기재 금원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금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표1] 송금행위 중 순번 7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송금행위’라고 한다).

라. 관련 형사사건

C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양쪽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900호, 2019고단951호, 2020고단1517(병합), 부산지방법원 2020노3087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C은 자신의 자금으로 위 아파트를 매수한 후 명의만 피고 앞으로 신탁하였다.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위 아파트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부부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므로 C은 대내적인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진다.

2) 위 아파트는 현재 제3자에게 매도되었으므로 C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었고 피고는

C에게 처분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C에 대한 약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처분대금 중 374,128,961원(이 사건 약정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대금은 635,684,000원인 사실,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분양권의 매도인인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합계 630,045,049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본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명의자인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일방이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 경우에

그것이 명의신탁관계에 해당하는지 취득자금의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일단 취득자금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추정을 반복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는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4)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7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과 피고는 2016. 11.경 결혼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2016년 한 해 동안 피고가 C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만도 5,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는 C과 결혼한 이후에도 C의 계좌로 수차례 송금하였으며, 적금 및 저축보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는 등 적지 않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보이는바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의 출처가 오로지 C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C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대내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C만이 소유자의 권리를 모두 보유하며, 피고는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될 경우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③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라면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④ 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 조사 시, ‘처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본인이 그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갑 제17호증, 11/31면), 이는 C이 원고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조사받던 중 투자금의 사용처를 추궁당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예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 1) 이 사건 송금행위는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 및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므로 위 증여계약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약정금채권(374,128,96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가액반환)으로 374,128,9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송금행위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 3) C이 2017. 12. 7.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대출금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2018. 9. 7. C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원고가 2018. 9.경 C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이 사건 소송은 2019. 9. 11. 제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송금행위의 존재와 C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송금행위 중 순번 6, 8 내지 14번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사해행위 성립 여부)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계약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나 신탁자와 수탁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참조).

2) C 내지 제3자 명의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거나 피고와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피고와 C은 부부였다. 원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송금행위 외에도 2017년 1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C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지속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졌는바, 그중 일부 송금 내역만을 임의로 특정하여 C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거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맺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C 명의로 피고에게 송금된 것은 두 차례에 불과하고(순번 1, 4번), 나머지 송금행위는 모두 제3자 명의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 사건 송금행위의 입금자 중 J은 피고의 친동생으로, J이 누나인 피고에게 송금한 돈을 두고 C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거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돈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명의로 부과된 등록면허세 등이 출금되었고, 그 밖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보험료, 신용카드대금 등 C와 피고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었다.

④ 원고는, C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계좌를 자신이 이용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계약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C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에 투자금을 이체시킨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돈이 다시 C에게 송금되었다면 위 돈에 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송금행위에 대하여 증여계약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좌로 각 송금된 돈을 C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면(2021. 3. 17.자 준비서면 8/12면), 이 사건 송금행위에 대한 증여계약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인 C에게 복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로써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다.

라. 소결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행남, 판사 이윤규, 판사 이나리

별지

[표1: 송금내역]

순번	가. 일자	나. 송금액(원)	다. 입금자명
1	2018. 8. 6.	3,800,000	C
2	2018. 8. 8.	100,000 ¹⁾	J
3	2018. 8. 26.	300,000	J
4	2018. 8. 27 ²⁾	3,000,000	C
5	2018. 8. 31.	480,000,000	K
6	2018. 9. 22.	1,000,000	J
7	2018. 9. 24.	3,000,000	C
8	2018. 9. 28.	7,000,000	L
9	2018. 10. 13.	10,000,000	I
10	2018. 10. 20.	300,000	J
11	2018. 11. 22.	50,000,000	I
12	2018. 11. 22.	100,000,000	I
13	2018. 11. 22.	100,000,000	I
14	2018. 11. 22.	276,000,000	M

1) 원고의 2020. 11.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상에는 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00,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위 별지상에는 2018. 8.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8. 27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